
대명빌리지 재건축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2026. 06.

구 리 시
(균형개발과)

배점기준 총괄표

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1) 책임기술인 〈18〉	(가)등급		부적격 시 실격	
		(나)경력		8	
		(다)실적	건수	5	
			금액	5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가)등급		2	
		(나)경력		6	
		(다)실적	건수	5	
			금액	5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가)등급		2	
		(나)경력		3	
		(다)실적		4	
【소계】				【45점】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12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13	
	【소계】			【25점】	
[다] 신용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2) 업무정지			3	
	(3) 재정상태 건실도			3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1	
	(2) 활용실적			1	
	(3) 투자실적			8	
	【소계】			【10점】	
[마] 업무중첩도	(1) 책임기술인			6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소 계			【10점】	
합 계				【100점】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0.3	

*경기도 공고 2025-5734 [별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 인	(1) 책임기술인	[45]													
		(18)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8	- 경력 기간												
			<table><tr><td>구분</td><td>10년 이상</td><td>10년 미만 ~9년 이상</td><td>9년미만 ~8년이상</td><td>8년 미만 ~7년이상</td><td>7년미만</td></tr><tr><td>배점</td><td>8.0</td><td>7.2</td><td>6.4</td><td>5.6</td><td>4.8</td></tr></table>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 미만 ~7년이상	7년미만	배점	8.0	7.2	6.4	5.6	4.8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 미만 ~7년이상	7년미만								
		배점	8.0	7.2	6.4	5.6	4.8								
		(다) 실적(건수)	5	- 실적 건수											
			<table><tr><td>구분</td><td>14건 이상</td><td>14건 미만 12건 이상</td><td>12건 미만 10건 이상</td><td>10건 미만 8건 이상</td><td>8건 미만</td></tr><tr><td>배점</td><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table>	구분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구분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실적(금액)	5	- 실적 금액													
	<table><tr><td>구분</td><td>7억 이상</td><td>7억 미만 6억 이상</td><td>6억 미만 5억 이상</td><td>5억 미만 4억 이상</td><td>4억 미만</td></tr><tr><td>배점</td><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table>	구분	7억 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구분	7억 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등급	(18)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을 적용 시 : $\sum(\text{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 \times \text{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table><tr><td>구분</td><td>해당분야 특급기술인</td><td>해당분야 고급기술인</td><td>해당분야 중급기술인</td><td>해당분야 초급기술인</td></tr><tr><td>배점</td><td>2.0</td><td>1.8</td><td>1.6</td><td>1.4</td></tr></table>	구분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점	2.0	1.8	1.6	1.4		
		구분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점	2.0	1.8	1.6	1.4									
		(나) 경력	6	- 경력 기간											
			<table><tr><td>구분</td><td>7년이상</td><td>7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배점</td><td>6.0</td><td>5.4</td><td>4.8</td><td>4.2</td><td>3.6</td></tr></table>	구분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6.0	5.4	4.8	4.2	3.6
		구분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6.0	5.4	4.8	4.2	3.6										
(다) 실적(건수)	5	- 실적 건수													
	<table><tr><td>구분</td><td>11건이상</td><td>11건미만 9건이상</td><td>9건미만 7건이상</td><td>7건미만 5건이상</td><td>5건미만</td></tr><tr><td>배점</td><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table>	구분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배점	5.0	4.5	4.0	3.5	3.0		
구분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배점	5.0	4.5	4.0	3.5	3.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실적(금액)	5	- 실적 금액 <table><tr><td>구분</td><td>5억이상</td><td>5억미만 4.5억이상</td><td>4.5억미만 4억이상</td><td>4억미만 3.5억이상</td><td>3.5억 미만</td></tr><tr><td>배점</td><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table>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5억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5억이상	3.5억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구분	5억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5억이상	3.5억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적용 시 : $\sum(\text{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 \times \text{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가) 등급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table><tr><td>구분</td><td>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td><td>해당분야 중급기술인</td><td>해당분야 초급기술인</td></tr><tr><td>배점</td><td>2.0</td><td>1.8</td><td>1.6</td></tr></table>	구분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점	2.0	1.8	1.6				
구분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점	2.0	1.8	1.6												
(나) 경력	3	- 경력 기간 <table><tr><td>구분</td><td>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미만 2년이상</td><td>2년미만</td></tr><tr><td>배점</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table>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3.0	2.7	2.4	2.1	1.8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3.0	2.7	2.4	2.1	1.8										
(다) 실적(건수)	4	- 실적 건수 <table><tr><td>구분</td><td>8건 이상</td><td>8건 미만 6건 이상</td><td>6건 미만 4건 이상</td><td>4건 미만 2건 이상</td><td>2건 미만</td></tr><tr><td>배점</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table>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구분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 건수	[25] (12)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실적 건수 (12점) <table><tr><td>구분</td><td>5건 이상</td><td>5건 미만 4건 이상</td><td>4건 미만 3건 이상</td><td>3건 미만 2건 이상</td><td>2건 미만</td></tr><tr><td>배점</td><td>12.0</td><td>10.8</td><td>9.6</td><td>8.4</td><td>7.2</td></tr></table>	구분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12.0	10.8	9.6	8.4	7.2
	구분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12.0	10.8	9.6	8.4	7.2									
(2) 금액	(13)	- 실적 금액 (13점) <table><tr><td>구분</td><td>500%이상</td><td>500%미만 ~400%이상</td><td>400%미만 ~300%이상</td><td>300%미만 ~200%이상</td><td>200%미만</td></tr><tr><td>배점</td><td>13.0</td><td>11.7</td><td>10.4</td><td>9.1</td><td>7.8</td></tr></table>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구분	500%이상	500%미만 ~400%이상	400%미만 ~300%이상	300%미만 ~200%이상	200%미만	배점	13.0	11.7	10.4	9.1	7.8	
구분	500%이상	500%미만 ~400%이상	400%미만 ~300%이상	300%미만 ~200%이상	200%미만										
배점	13.0	11.7	10.4	9.1	7.8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10] (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처분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받은 용역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table><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0</td><td>2.8</td><td>2.1</td><td>0</td></tr></table> * 첨부1 참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10] (1)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table><tr><td>경과기간</td><td>5년 미만</td><td>5년 이상 10년 미만</td><td>10년 이상 20년 미만</td></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able>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2) 활용실적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 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table><tr><td>구 분</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r><td>실적건수</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r><tr><td>실적금액 (억원)</td><td>20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r></table>	구 분	1.0	0.9	0.8	0.7	0.6	실적건수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 분	1.0	0.9	0.8	0.7	0.6															
	실적건수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table><tr><td>구분</td><td>3%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td></tr><tr><td>배점</td><td>8.0</td><td>7.2</td><td>6.4</td><td>5.6</td><td>4.8</td></tr></table>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배점	8.0	7.2	6.4	5.6	4.8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배점	8.0	7.2	6.4	5.6	4.8																
마. 업 무 중 첩 도	(1) 책임기술인	[10]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table><tr><td>구분</td><td>12월 미만</td><td>12월이상 15월미만</td><td>15월이상 18월미만</td><td>18월이상 21월미만</td><td>21월이상</td></tr><tr><td>배점</td><td>6.0</td><td>5.4</td><td>4.8</td><td>4.2</td><td>3.6</td></tr></table>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구분	12월 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배점	6.0	5.4	4.8	4.2	3.6						
	구분	12월 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배점	6.0	5.4	4.8	4.2	3.6															
	(2)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table><tr><td>구분</td><td>12월 미만</td><td>12월이상 15월미만</td><td>15월이상 18월미만</td><td>18월이상 21월미만</td><td>21월이상</td></tr><tr><td>배점</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table>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가중치 입찰공고시 제시)	구분	12월 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배점	4.0	3.6	3.2	2.8	2.4						
구분	12월 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배점	4.0	3.6	3.2	2.8	2.4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부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 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경기도 공고 2025-5734호>

I. 일반사항

1. 발주청은 입찰공고 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

구분	분류	인정범위
1. 정밀안전 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토목분야	○ 토목분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육교, 공동구)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건축분야	○ 건축분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2. 정밀안전진단	가. 교량 및 터널분야	○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육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수리시설분야, 항만분야 및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단,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나. 수리시설분야	○ 수리시설분야(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교량 및 터널분야, 항만분야,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단,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다. 항만분야	○ 항만분야(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시설분야,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단,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라. 건축 분야	○ 건축분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건축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참여 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할 수 있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 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5.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중 준공금액 5,000만원 이상을 용역수행실적에 한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6.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7.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

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Ⅲ. 항목별 채점 기준

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45점】

(공통분야)

- ①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총 3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② 해당 기술자격증, 학력인정서,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 수료증,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 인감날인)

(1) 사업책임기술인 (18점)

(가) 자격평가

- 1) 사업 책임기술인은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이어야 합니다.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합니다.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를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나) 경력평가(8점)

- 1)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2)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3) 배점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점수	8.0	7.2	6.4	5.6	4.8

(다) 실적(건수) 평가(5점)

-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5,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 분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3) 해당 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 실적만 인정합니다.

4) 배점

구분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단, 0건은 0점 처리함]

(라) 실적(금액) 평가(5점)

구분	7억 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단, 0원은 0점 처리함]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함(「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인이어야 함)]

(가) 자격평가 (2점)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합니다.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합니다.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4) 배점

분 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계	2.0	1.8	1.6	1.4

(나) 경력평가(6점)

1) 사업 책임기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2) 배점

구분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계	6.0	5.4	4.8	4.2	3.6

(다) 실적(건수) 평가 (5점)

1) 사업 책임기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2) 배점

구분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단, 0건은 0점 처리함]

(라) 실적(금액) 평가(5점)

구분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5억원이상	4.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계	5.0	4.5	4.0	3.5	3.0

[※ 단, 0원은 0점 처리함]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함(「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인 이어야 함)]

(가) 자격평가(2점)

1)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2) 배점

분 야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계	2.0	1.8	1.6

(나) 경력평가(3점)

1)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2) 배점

구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다) 실적평가(4점)

1)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2) 배점

구분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	4.0	3.6	3.2	2.8	2.4

[※ 단, 0건은 0점 처리함]

나. 참여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5점】

(1) 기준

- (가) 유사용역사업 인정대상사업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중 준공금액 5,000만원 이상을 용역수행 실적에 한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합니다.
-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합니다.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교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 (다)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 표기)
- (라) 유사용역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실적금액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2) 배점

(가) 실적건수(12점)

구분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	12.0	10.8	9.6	8.4	7.2

※ 단, 0건은 0점 처리함

(나) 실적금액(13점)

구분	500%이상	500%미만 ~400%이상	400%미만 ~300%이상	300%미만 ~200%이상	200%미만
점수	13.0	11.7	10.4	9.1	7.8

※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단, 0원은 0점처리 함

다. 신용도 【10점】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점)

- (가) 최근 1년간(처분일 기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합니다.

(2) 업무정지 (3점)

- (가) 참여기술인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합니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3점)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합니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가능합니다.

(나) 신용정보업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1) 개발실적 (1점)

(가) 개발실적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합니다.

①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② 특허 : 0.3점 / 건당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다)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합니다.

(라) 위 (가)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함)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합니다.

(2) 활용실적 (1점)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 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12·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①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② 특허 : 0.3점 / 건당

(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마)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합니다.

※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1.0	0.9	0.8	0.7	0.6
실적건수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주1)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 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한국건설교통 신기술협회)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주2)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투자실적 (8점)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다)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공동이행 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 회사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산출한 실적)에 참여지분을 곱하여 합산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점】

(1) 책임기술인(6점)

(가) 수행 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가) 수행 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가중치 입찰공고시 제시)]

- (1)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허위 또는 누락 시에는 업무중첩도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 (2)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을 평가하며,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한다.

바. 가점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양식

2cm	2cm
2cm	
접수번호 [13Point]	

용역 [18Point]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8Point]

20 . . [23Point]

회 사 명 : [16Point]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첨부 3. 용역참여신청서 양식

용역 참여 신청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000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000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용역명 : _____ 용역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0 년 월 일

대표회사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_____ 귀하

첨부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작성 양식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붙임 : 공동수급 협정서 사본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